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
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2.6.10.)에 따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 교섭대표와의 협의·교섭, 고충처리, 안전·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·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신설

나. 개정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(제3조의2)

나.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(제3조의3)

다.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(제3조의4)

라.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(제3조의5)

마.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(제3조의6)

바.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·보수 등(제3조의7)

사.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등 준용방식(제14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근무시간 면제 협의 및 동의 절차)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단체협약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(이하 “정부교섭대표”라 한다)의 동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, 근무시간 면제자의 구분 등 근무시간 면제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교섭절차에 따른다.

③ 제1항의 사항을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고, 정부교섭대표는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7조의2제2항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와 법 제7조의 노동조합

의 전임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.

⑤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범위 내(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‘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’로 한다)에서 제4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3조의3(조합원의 수 등 자료제출) ① 제3조의2에 따른 협의 및 동의를 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의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정부교섭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,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확인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 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”은 “제7조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”로 본다.

제3조의4(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) ① 제3조의2에 따른 협의 및 동의를 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의받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(이 영에서 ‘임용권자’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말한다)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의 임용권자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제출받은 정

부교섭대표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7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,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면제자 지정에 있어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임용권자에게 그 지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④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,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용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조의5(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절차 등) ①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정부교섭대표에게 그 사용시간,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사용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면제 시간 사용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의6(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방법 등) ① 정부교섭대표는

법 제7조의3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
2.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한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
3.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(근무시간이 전부 면제된 자와 부분 면제된 자를 구분한다)
4.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3년간 공개한다.

③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법 제7조의3의 후단에 따라 소속 근무시간 면제 인원에 대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정보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의7(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) 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복무규정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 전단 중 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(이하 “정부교섭대표”라 한다)”를 “정부교섭대표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후단 중 “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“노동위원회”는 “중앙노동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“중재위원회”는 “공무원 노동관계

조정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”은 “연합단체인 노동조합,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,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”으로, 같은 항 제14호 중 “법 제96조”는 “법 제96조(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)”로 보고, 같은 영 중 “근로자”는 각각 “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행정관청”은 각각 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 본다”를 “같은 영 제11조의3 중 조문 제목에 “위원회”는 “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”로, 본문에 “위원회”는 “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 중 “위원회”는 “심의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11조의4제1항 본문 중 “단체”는 “단체 또는 정부교섭대표”로, 제1호의 “해당 단체의 전직·현직 임원”은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”를 “제11조의2”로 한다.

가. 노동단체의 전직·현직 임원

나.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”으로,

같은 영 제11조의5제1항 중 “2년”은 “3년”으로,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“노동위원회”는 “중앙노동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“중재위원회”는 “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

조합”은 “연합단체인 노동조합,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,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”으로, 같은 항 제14호 중 “법 제96조”는 “법 제96조(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)”로 보고, 같은 영 중 “근로자”는 각각 “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행정관청”은 각각 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근무시간 면제 협의 및 동의 절차)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단체협약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(이하 “정부교섭대표”라 한다)의 동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, 근무시간 면제자의 구분 등 근무시간 면제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.</u> <u>② 제1항의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교섭절차에 따른다.</u> <u>③ 제1항의 사항을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고, 정부교섭대표는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2항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7조의2제2항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범</u>

<신 설>

위 내에서 조합원 수와 법 제7조의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.

⑤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범위 내(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‘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’로 한다)에서 제4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3조의3(조합원의 수 등 자료제출) ① 제3조의2에 따른 협의 및 동의를 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의 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정부교섭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,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수 확인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”

<신 설>

은 “제7조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”로 본다.

제3조의4(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) ① 제3조의2에 따른 협의 및 동의를 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의받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(이 영에서 ‘임용권자’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말한다)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의 임용권자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 명단과 사용시간 등을 제출받은 정부교섭대표는 근무시간 면제 예정자를 법 제7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,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른 면제자 지정에 있어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임용권자에게 그 지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④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,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용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조의5(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절차 등) ①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정부교섭대표에게 그 사용시간,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

<신 설>

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사용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근무시간 면제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면제 시간 사용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의6(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방법 등) ①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7조의3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
2.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한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
3.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

<신 설> 제5조(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 보)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	<u>간 면제 사용인원(근무시간이 전부 면제된 자와 부분 면제 된 자를 구분한다)</u> 4. <u>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 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정보는 공개일 로부터 3년간 공개한다.</u> ③ <u>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 자는 법 제7조의3의 후단에 따 라 소속 근무시간 면제 인원에 대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 한 정보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</u> <u>제3조의7(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) 법 제7조의2 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 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복무 규정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.</u> 제5조(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 보) <u>정부교섭대표</u>-----
--	---

교섭대표(이하 “정부교섭대표”라 한다)는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,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제14조(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)

①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용노동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행정관청”이라 한다)”은

-----.

제14조(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)

① -----

-----.

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, 같은 영 제9조제3항·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”는 각각 “해당 기관의 장”으로, 같은 영 제10조제4항 중 “사업 또는 사업장”은 각각 “기관”으로,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“노동위원회”는 “중앙노동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“중재위원회”는 “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”은 “연합단체인 노동조합,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,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”으로, 같은 항 제14호 중 “법 제96조”는 “법 제96조(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)”로 보고, 같은 영 중 “근로자”는 각각 “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행정관청”은 각각 “고용노동부

--- 같은 영 제11조의3 중 조문 제목에 “위원회”는 “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”로, 본문에 “위원회”는 “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 중 “위원회”는 “심의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11조의4제1항 본문 중 “단체”는 “단체 또는 정부교섭대표”로, 제1호의 “해당 단체의 전직·현직 임원”은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장관”으로 본다.

가. 노동단체의 전직·현직 임
원

나.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
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
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
직하고 있는 사람”으로,

같은 영 제11조의5제1항 중 “2
년”은 “3년”으로, 같은 영 제29
조제1항 중 “노동위원회”는 “중
앙노동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0
조제1항 중 “중재위원회”는 “공
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”로,
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
부분 단서 중 “연합단체인 노동
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
노동조합”은 “연합단체인 노동
조합,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
·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
노동조합, 그 밖의 전국 규모의
단위노동조합”으로, 같은 항 제1
4호 중 “법 제96조”는 “법 제96
조(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
한다)”로 보고, 같은 영 중 “근로
자”는 각각 “공무원 또는 법 제6
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”

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7조, 제8조, 제11조제1항 제4호, <u>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</u>, 제14조,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, 제17조, 제18조,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,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,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8조, 제29조제2항, 제31조,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제10호 · 제12호 · 제13호 · 제17호 · 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<u>으로, “행정관청”은 각각 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 본다.</u> ② ----- ----- ----- --- <u>제11조의2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	
연 락 처	(044) 202 - 7509